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326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	---

1. 대납자에 대한 납입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 통지	2
---------------------------------------	---

I. 개요

1.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32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명옥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6. 18.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서를 납부의무자에게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보험료 액수·납부기한 등의 고지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납부지연 및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사항을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대납자에 대한 납입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 통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납부의무자가 본인에 대한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대납자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납부의무자의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대납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납자가 납부의무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대납하지 아니하면 대납자에 대한 통지를 중단하도록 함(안 제81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81조의7(대납자에 대한 납입 고지 등의 통지) ① 납부의무자의 보험료를 대납(代納)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납자”라 한다)는 공단에 납부의무자에 대한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납자는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대납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대납자가 납부의무자의

	<u>보험료를 대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납부의무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중단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79조¹⁾는 건강보험료 등을 징수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납부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단은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료의 산정 내역, 납부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계좌 등을 포함한 납부 고지서를 통해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고 있음.

1)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양식 >

1단 (좌: 표지 / 우: 산정내역)

[illegible]

2단 (좌: 건강보험영수증 / 우: 건강보험고지서)

보험료 납부 안내

- ▶ 건강·의료보험료는 **월별** 납부하는 납부제에 해당하며, 납부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납부마감일이다.
- ▶ 지체가입자는 주소지가 정해진 경우에만 세무서로 납부한다.
- ▶ 지체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기간의 주민등록번호와 납부제에 해당하며, 이 고지서는 각 세무서·가정·사무소에 고지서로 발송해 드립니다.

납부 QR 코드

세무서 방문 납부

납부 QR 코드

영수증 (납부자용)

납부자번호

납부자번호

납부할 금액

보험료 납부 안내 사항

- ▶ 전자납부 시 연회료가 실시간 조회되어 고지서와 금액이 일치할 수 있습니다.
- ▶ 고지서와 가상계좌 납부는 납부기한 마지막 고지서일 기준으로 입원 가능하며 연회금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 가상계좌 이용시간 : 04:30 ~ 23:30까지
- ▶ [납부참조소] 오른쪽엔, 무통장, 농수협/지역조합 포함, 세무서출납금, 전입, 출생지, 산부조출생양회,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민타넷지문(www.gpro.or.kr), 건강보험24시센터, 모바일지문(앱)

고지서 (금융기관용)

전자납부가능 통합서회보필로

납부자번호

전자납부번호

보험료 납부기한

가상계좌 납부

자동안제 신청 지로번호

건강	6102546
연금	610524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편, 공단은 다음과 같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을 통해 납부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등이 건강보험료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 제5절 보험료등 수납관리(1~3) 중 >

지역가입자		
구분	계좌	신용카드
본인납	본인 명의 계좌 및 본인 개인사업자 계좌	본인 명의 카드 및 본인 개인사업자 카드
대납	대납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및 본인 개인사업자 계좌 지역가입자 보험료 법인계좌 대납 불가 - 예외: 종교단체(비영리법인) 대납가능	대납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 및 본인 개인사업자 카드
신청방법	방문에 의한 서면신청, 팩스, 우편, 전화(지사 또는 고객센터), 공단 대표 홈페이지,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 ※ 종교단체(비영리법인)대납신청 시에는 방문, 팩스, 우편만 가능	
개인사업장		
구분	계좌	신용카드
본인납	본인 명의 계좌 및 본인 개인사업자 계좌	본인 명의 카드 및 본인 개인사업자 카드
대납	대납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및 본인 개인사업자 계좌	대납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 및 본인 개인사업자 카드
신청방법	방문에 의한 서면신청, 팩스, 우편, 전화(지사 또는 고객센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법인사업장		
구분	계좌	신용카드
본인납	해당 법인 명의 계좌	해당 법인 명의 카드
대납	법인은 타 법인 계좌를 통한 대납 불가 ※ 두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여도 대납불가 ① 해당 법인 소속 직원 또는 대표자의 가족 계좌로 대 납 가능 ※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민원예방 위해 사전 안내 철 저 ② 동일 법인번호 하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본 사의 법인 계좌로 지사(지점)의 자동이체를 등록 가능 ③ 위수탁계약을 통해 공동주택, 민간(공공)임대주 택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사업장(관리하는업(業) 을 하는 자) 소속 관리사무소의 보험료를 해당 아 파트 단지의 기존관리사무소 계좌로 대납 가능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계좌로 대납 가능 ※ 민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계좌로 대납 불가	해당 법인의 대표자(공동대표자)의 개인카드 ※ 타 법인카드로 대납 불가 -두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여도 대납 불가
신청방법	방문에 의한 서면신청, 팩스, 우편, 전화(지사 또는 고객센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공통사항		
대납처리 유의사항	- 대납 신청 시 대납자와 납부의무자간 관계를 반드시 전산으로 확인 ※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납부의무자와 전화를 통해 확인 - 사업장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또는 사업장 소속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통해 해당 사업장 소 속 여부 반드시 확인(단, 직원 소속 여부가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재직증명서, 위임장 추가 징구)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5년 말 기준 약 65만 세대가 공단의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자동이체 대리납부 이용현황〉

(단위: 천세대, 억원)

구분	'22년 말		'23년 말		'24년 말		'25년 말	
	전체	65세 이상 (비중)	전체	65세 이상 (비중)	전체	65세 이상 (비중)	전체	65세 이상 (비중)
대납 세대	721	127 17.57%	694	134 19.30%	680	147 21.66%	649	161 24.74%
대납 금액	742	140 18.89%	727	151 20.72%	706	162 22.93%	682	175 25.6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그런데 이처럼 대납이 이루어지더라도 현행법 제79조에 따라 납입 고지는 건강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대납자가 아닌 납부의무자에게 이루어지는바, 이로 인해 공단은 다음과 같은 민원들이 제기된 바 있다는 설명임.

< 대납자에 대한 납부고지서 미발송으로 인한 민원 사례 >

실제 최근 민원사례 재구성

- ◆ A씨는 가족의 보험료를 매월 자동이체로 대리납부하고 있었으나, 통장·카드 변경 과정 중 자동이체가 해지되었고 A씨는 고지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 자동이체 신청을 누락하여 원 납부의무자의 보험료가 미납되고 연체금 발생
⇒ 평소 고지서를 받았으면 통장 변경 시 대납 신청을 누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민원제기

실제 최근 민원사례 재구성

- ◆ B씨는 평소 부모님 보험료 자동이체 통장을 별도로 두고, 해당 금액만큼 매월 잔고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1월 부과자료 시 부모님 보험료가 증가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잔고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실패하고 체납이 발생
⇒ 고지서를 통해 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체납이 없었을 거라고 항의

실제 최근 민원사례 재구성

- ◆ 부모님과 별도세대를 구성한 자녀 C씨는 양가의 보험료 모두를 부담하던 중, 부모님 세대로 형제 일가가 전입하고, 모친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됨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였으나, C씨는 세대 구성원 변경 및 보험료 증가 사유를 알지 못해 체납 발생 ⇒ **고지서 발송으로 금액 등 확인 가능토록 건의**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대납자에게 납입 고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공단은 지난 2025년 12월부터 대납자에게 개인정보를 제외한 필수내역(보험료, 자동이체 일자·유형 등)을 알림톡을 통해 안내하는 ‘대납자 알림’ 정책을 시행하여 월 평균 40만건의 대납알림을 전송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음, 개정안에 따르면 대납자에게만 납입 고지서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인지, 납부의무자에 더해 대납자에게도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만일, 개정안이 대납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경우 대납자가 보험료를 미납하면 그에 따른 연체금, 급여 제한,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불이익은 납부의무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공단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대납 648,801건 중 19,128건(2.95%)의 미납이 발생하였음.

- 한편, 개정안이 납부의무자뿐만 아니라 대납자에게도 이를 통지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경우 공단은 이에 따라 종이고지서를 추가 발송하면 월 약 3억원, 연간 약 3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음²⁾.

< 납부의무자 및 대납자 모두에 대한 고지서 발송 시

재정 소요 추계(국민건강보험공단)>

◆ (추정산식) '25.12월 자동이체 대리납부 세대 수 × 건당 단가 × 12개월

자동이체 대리납부 세대	(건 당) 제작·발송 단가	월간 비용	연간 소요액
648,801세대 ('25년말 기준)	467.2원* (인쇄, 용역, 봉투, 우편)	3.0억원	36.4억 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또한, 건강보험 외에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 개정안과 같이 대납자에 대하여 납입 고지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 입법례를 규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³⁾에서는 납세관리인 제도를 두어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부의 고지·독촉에 관한 서류를 납세자가 아닌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관리인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 두도록 하고 있어 단순히 대리납부를 하고 있는 경우

2) 공단은 대납 제도를 이용하는 납부의무자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납자에게만 통지를 하도록 한다면 주로 자녀에 해당하는 대납자에게는 전자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납부의무자와 대납자에게 통지를 병행한다면 납부의무자에게는 종이 고지서가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임.

3)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82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④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39조(납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에 따라 대납자에 대한 납입 고지 등의 통지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경우 이는 대납 제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미비한 대납의 근거부터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납부의무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자에게 납입 고지 등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다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대납’에 관한 정의가 없으므로 이를 ‘실제 납부자’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실제 납부자의 범위, 신청방법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실제 납부자(대납자)에게 납부의무자의 고지내역을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납부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함.
- 매년 보험료를 대리납부하는 세대·금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 세대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비중 및 금액은 증가하고 있음. 이는 보험료 고지내역 확인 및 납부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을 대신해 가

족·친족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인구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납부의무자 대신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는 대납자의 알권리 보장 및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급여제한·민원불편 사전차단을 위해 자동이체 대납자에게 개인정보를 제외한 필수내역(보험료, 자동이체 일자·유형 등)을 알림톡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대납자가 구체적 고지·독촉내역을 인지하기 어려워 고령층 체납세대 및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납자가 구체적인 보험료 고지·체납내역 인지할 수 있도록 대납자에게 납부의무자의 고지서를 발송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납부지연 및 체납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납부행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제81조의7제4항에 보험료 대납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없어 하위법령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대납자의 범위’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503